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투자를 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5.10.15.(수) 석간		배포	2025.10.14.(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1팀	책임자 담당자	부국장 선임검사역	송현철 김종현	(02-3145-7645) (02-3145-7632)
합법 VS 불법, 유사투자자문 제대로 알아야 피해가 줄어듭니다 - 속풀 영상 · 카드뉴스로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피해 예방 안내 -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유튜브 등)를 통해 홍보 중
 - ※ ('23년) 유튜브 영상 캠페인(유튜버 '슈카' 출연), 라디오 음성광고 제작, 포스터 제작 등 ('24년) 유튜브 영상(금융쪽 브리핑), 영상(영화관)·음성(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포스터 제작 등
- 금년에는 속풀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하여 영상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을 안내
 - * '1분 미만' 채널(구독자: 256만명) 및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
 - 또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우리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 등에 게시
- 정보 전달이 빠르고 확산력이 높은 속풀 영상 및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이용과정에서 피해 발생시 피해신고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 홍보콘텐츠 >

	콘텐츠	주제	채널
1	유튜버 '1분 미만' 속풀 영상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 및 예방·신고방법	1분 미만·금감원 유튜브
2	카드뉴스		금감원 인스타 등 SNS
3	홈페이지 배너		금감원·한국소비자원·증권사

II. 세부 홍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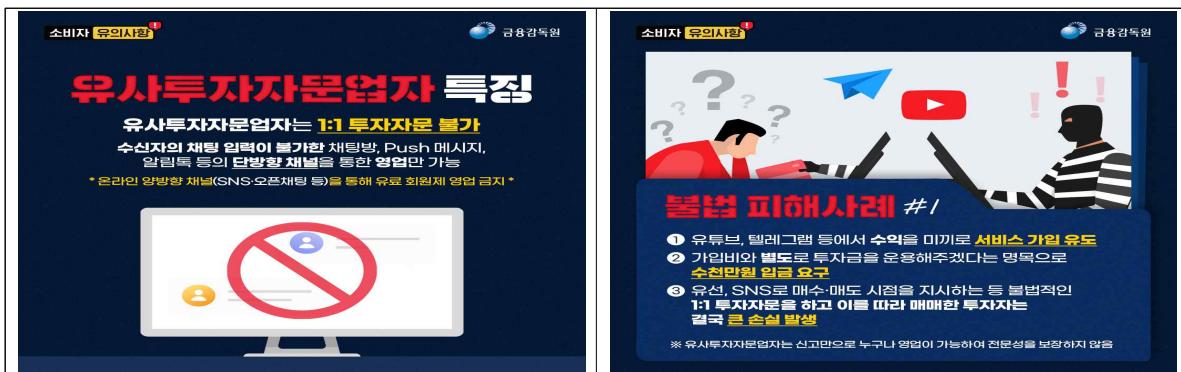
① 속풀 영상 (유튜버 '1분 미만' 협업)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 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등 예방방법 소개
 -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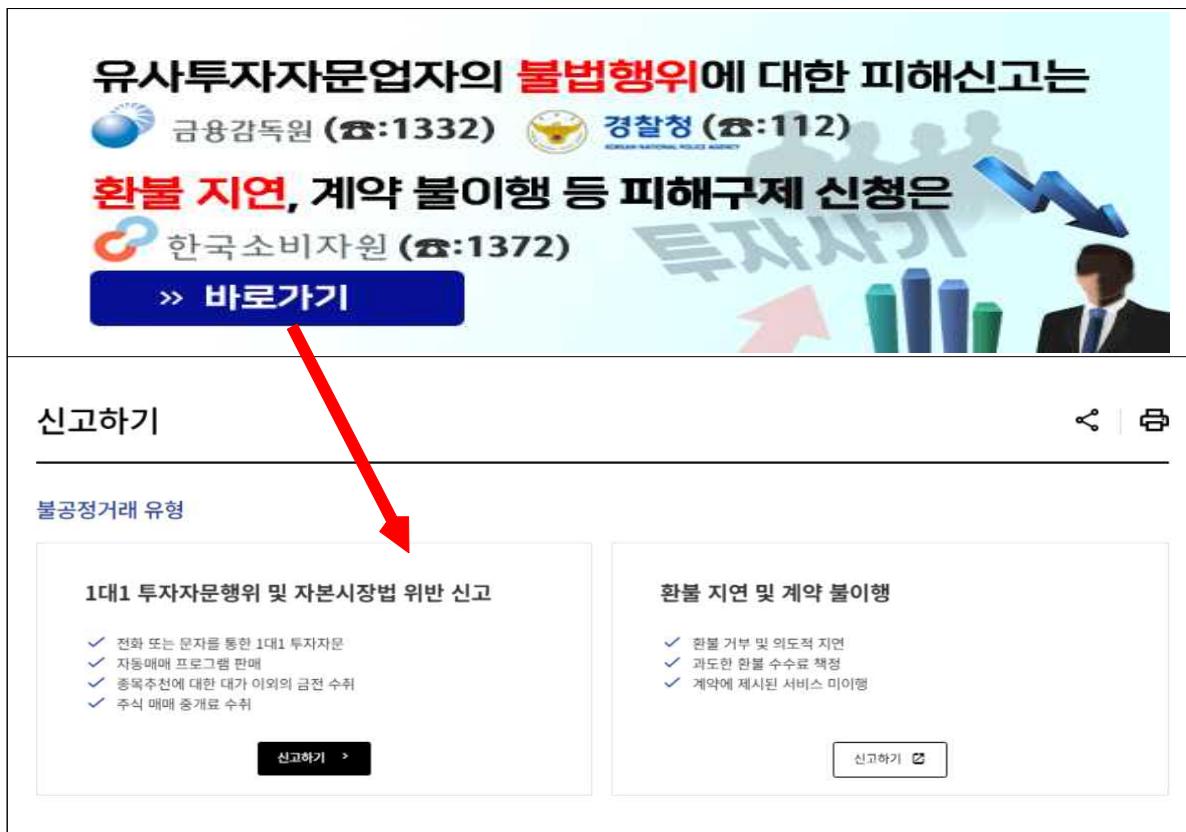
② 카드뉴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리딩방·불법 리딩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투자자문·일임,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피해사례 소개
-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1:1 투자자문 등) 발견시 금감원 등에 신고 필요성을 안내



③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배너

-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여 ‘바로 가기’ 한 번으로 투자자가 신속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III.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또한, 유사투자자문 단속(일제·암행점검) 및 유관기관(경찰청 등)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참 고 유사투자자문 주요 피해 대응방법

1. 사전적 대응방법

① OO투자클럽, ■■스탁 등의 명칭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을 명심

⇒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하고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

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유의

⇒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가 제시하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

③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 업체명, 정보명칭 등을 검색하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필요

④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환불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소비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

2. 사후적 대응방법

① 1:1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견시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금감원(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② 계약해제 및 환불 지연·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 계약상 분쟁의 문제로 ‘한국소비자원(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또는 민사 소송

붙임 카드뉴스 전체 내용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fsskorea>

[블로그] <https://blog.naver.com/fss2009>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sskorea>

2025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주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이용자 보호가 어려움

리딩방이란?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의 온라인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해주는 커뮤니티

불법 리딩방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유사투자자문업자 특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1 투자자문 불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의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가능
* 온라인 양방향 채널(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 영업 금지 *

불법 피해사례 #1

- 유튜브, 텔레그램 등에서 수익을 미끼로 서비스 가입 유도
- 가입비와 별도로 투자금을 운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 일금 요구
- 유선, SNS로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1:1 투자자문을 하고 이를 따라 매매한 투자자는 결국 큰 손실 발생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여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음

불법 피해사례 #2

- 유료회원들에게만 IPO(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의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협탁
- 업자가 미리 매수하여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유료회원들에게 고가에 매도하여 투자 손실을 초래

※ 실제 상장 예정된 바 없는 인터넷 허위 기사 등을 통해 투자 기망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피해사례 #3

- 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가입 후 **중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 ② 환불을 위해서는 고소, 민원제기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환불 지연
- ③ 또는, 콜센터로부터 환불이 **완료**되었다고 답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환불 미이행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 예방방법 #1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 필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업체로
계약 체결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 매우 높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홈페이지에서
정식 신고업체 여부 확인

*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 예방방법 #2

계약 해지·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의 피해 발생시,
[한국소비자원\(kca.go.kr\)](http://kca.go.kr)에서 피해구제 상담 및 신청

피해 예방방법 #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자문행위(미등록 투자자문),
손실보전·이익보장·목표수익률 등의 광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fss.or.kr\)](http://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또는 경찰청에 신고